## 교육세법 시행령



[시행 2024. 2. 29.] [대통령령 제34274호, 2024. 2. 29., 일부개정]

기획재정부 (금융세제과) 044-215-4236 기획재정부 (환경에너지세제과) 044-215-4333

제1조(납세의무자) 「교육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별표 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"란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,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제외한다.

[전문개정 2017. 2. 7.]

- **제2조(과세표준의 계산)** ①개별소비세액·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「개별소비세법」 ·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또는「주세법」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1996. 5. 4., 2006. 2. 9., 2007. 2. 28., 2007. 12. 31.>
  - ②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  - ③법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·가 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·가공한 물품의 개별소비세산출세액·교통·에너지·환경세산출세액 또는 주세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에 대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액·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<개정 1996. 5. 4., 2007. 2. 28., 2007. 12. 31.>
- **제3조(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)**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.
  - 1. 외화자금의 매각으로 획득한 원화자금의 총운용수익 및 외화자금의 환매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보전수익의 합계 액
  - 2. 외화자금차입에 따른 총지급이자·각종수수료 및 외화자금의 환매시 한국은행이 환수하는 국내·국외금리차와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
- **제3조의2(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)** 법 제5조제3항에서 "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
  - 1. 「보험업법」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항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
    - 가. 「보험업법」제12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해당 금융·보험업자의 모든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(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. 이하 "계약자적립액"이라 한다)
    - 나.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 및 환급액을 고려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(손해사정,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배당액을 포함한다. 이하 "발생사고요소"라 한다)
  - 2. 「법인세법」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(이하 "비상위험준비금"이라 한다) [본조신설 2023. 2. 28.]
- 제4조(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) ①법 제5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00. 12. 29., 2004. 12. 31., 2007. 2. 28., 2009. 2. 4., 2010. 2. 18., 2010. 12. 30., 2011. 7. 14., 2014. 2. 21., 2015. 2. 3., 2021. 2. 17., 2023. 2. 28.>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수입할인료
- 2.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
- 3. 신탁보수
- 4. 대여료
- 5.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
  - 가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,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(이하 이 호에서 "파생상품등"이라 한다) 거래의 손익을 통산(通算)한 순손익(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)
  - 나. 외환(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)매매손익(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・부 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)
- 5의2. 삭제 < 2011. 7. 14.>
- 5의3. 삭제 < 2011. 7. 14.>
- 6. 수입임대료
- 7. 고정자산처분익
- 7의2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에서 발생한 이익
- 8.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
-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06. 2. 9., 2009. 2. 4., 2010. 2. 18., 2010. 12. 30., 2015. 2. 3., 2016. 9. 22.>
- 1.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
- 2. 자산·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·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. 「법인세법」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
  - 나.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
  - 다.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
  - 라.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 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
- 3. 국고보조금 · 보험차익 ·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
- 3의2.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
- 4.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
- 5.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
- 6.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・출재이익수수료・이재조사비
- 7. 법 별표 제4호・제9호・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・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
- 8.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·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,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
- 9.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・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
- 10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(이하 "신용카드 발행자"라 한다)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(이하 "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"라 한다)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
- 11.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
  - 가. 보증료
  - 나.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
  - 다.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2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(이하 이 호에서 "한국산업은행"이라 한다)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
  - 가.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「한국정책금융공사법」(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(이하 이 호에서 "한국정책금융공사"라 한다)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(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이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한다)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
  - 나.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업무로서「한국정책금융공사법」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금융・보험업자에게 대출・투자 또는 보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
- ③ 삭제<2010. 12. 30.>
- ④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"운용리스 원금"이라 한다)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<개정 2009. 2. 4.>
- ⑤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·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.<개정 1999. 4. 30., 2004. 12. 31.>
- ⑥「외국환거래법」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.<개정 2000. 12. 29,, 2004. 12. 31,, 2006. 2. 9.>
- ⑦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·수입할인료·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.<개정 2004. 12. 31.>
- ⑧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<신설 2009. 2. 4., 2010. 2. 18., 2023. 2. 28.>
- 1. 운용리스 원금
- 2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
- **제5조(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)**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(계약자적립액, 발생사고요소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)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1998. 12. 31., 2000. 12. 29., 2006. 2. 9., 2009. 2. 4., 2010. 2. 18., 2019. 2. 12., 2023. 2. 28.>
  - 1. 보험료·수재보험료·전기말 현재의 계약자적립액, 발생사고요소와 비상위험준비금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(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)의 합계액
  - 2. 당기말 현재의 계약자적립액, 발생사고요소와 비상위험준비금·해약환급금(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중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)·출재보험료(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)의 합계액. 다만,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에 가산한다.
    - 가. 만기・사망・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
    - 나.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 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
    - 다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감소한 계약자적립액 상당액
- 제6조(금융·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)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법 제 3조제1호에 따른 금융·보험업자(이하 "금융·보험업자"라 한다)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. <개정 2011. 7. 14, 2016. 3. 31.>
  - ②금융·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사항, 변경전・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.<신설 1993. 12. 31.>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<신설 1993. 12. 31.>

- 제6조의2(중간예납) ① 금융・보험업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(이하 "중간예납세액"이라 한다)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3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금융·보험업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.

[본조신설 2016. 2. 5.]

- **제6조의3(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)**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  - 1.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(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모두를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.
  - 2. 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  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법 제4조, 법 제5조,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가.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

나.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

[본조신설 2016. 2. 5.]

- 제7조(신고・납부)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・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「국세징수법」에 의한 납부서에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(그 대리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2. 9., 2016. 2. 5.>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・납부하는 때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조세의 신고・납부서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 그 합계액을 기재해야 한다.<개정 2021. 1. 5.>
- 제8조(부과와 징수) ①법 제10조에 따라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 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해야 한다. <개정 2021. 1. 5.> ②세무서장은 교육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에 대한 교육세임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 12. 29.>

제9조 삭제 <2000. 12. 29.>

**제10조** 삭제 <2000. 12. 29.>

**제11조** 삭제 <2000. 12. 29.>

제12조 삭제 <2000. 12. 29.>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**부칙** <제34274호,2024. 2. 29.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